

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(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1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강석주, 김영옥, 도문열,
신동원, 신복자, 이종환
의원(6명)

찬 성 자: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
김길영, 김영철, 김용호,
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
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
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
민병주, 박성연, 박춘선,
봉양순, 옥재은, 윤종복,
이봉준, 이성배, 이숙자,
최민규, 최윤희, 허 · 훈,
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서울시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, 이에 따라 모든 연령에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
- 이에 상위법인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
- 또한, 노후준비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노인 빈곤과 고립을 예방하고, 서울시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3조)
- 나. 노후준비지원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 규정(안 제4조)
- 다.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(안 제5조)

라.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및 운영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노후준비 지원법 및 시행령」 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후준비 지원법」에 따라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노후준비 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「노후준비 지원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
2.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
3.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4. 건강, 대인관계, 여가,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.

제5조(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(이하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1.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기반조성
2. 시·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
4.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
5.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「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제7조의2에 따른다.

제6조(사업비의 지원) 시장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보고·검사 등)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

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제8조(협의체 구성) 시장은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

연번	조항	추계대상 여부	판단 내용
1	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	×	기본계획 수립 ¹⁾ 은 통상 내부인력을 활용하여 수립하므로 추가 비용소요 가능성이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2	제5조(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)	△	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관련 비용이 발생하나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어르신복지과) 문의결과 해당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현재로서는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 ⇒ 유사사례 ²⁾ 를 준용하여 추계하려 하였으나 입법취지 등 문의결과 유사사례와 상이하여 자체추계 또한 곤란
4	제6조(사업비의 지원)		
5	제8조(협약체 구성)	×	협력체 구성 규정은 통상 비용을 수반요인 ³⁾ 이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○ 안 제5조(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)의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관련 비용은 서울시 관련부서(복지실 어르신복지과) 문의결과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소요비용 추정이 곤란함

- [추계가능성 및 재정소요 영향 검토] 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 관련 소요비용을 추정하려면 먼저 노후준비지원센터의 형태를 확정⁴⁾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유사·중복성, 사업규모, 사업운영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

- 1) [고려사항] 또한 통상 출연연구기관(서울연구원 등) 연구수행 결과물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음
⇒ 다만, 향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별도 용역 진행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확실한만한 합리적 정보가 적어 고려사항에서 제외함
- 2) [타 지자체 유사사례 검토] 서울시 성동구 지역노후준비센터 운영
○ (센터지정) 성동50플러스센터를 지역노후준비센터로 지정(2024. 9월 지정)
○ (주요업무)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무, 건강, 여가 등 5개 분야에 대한 진단 및 상담을 지원
- 노후준비에 관심이 있는 주민 대상 종합상담 시행 등
- 3) [재정소요 영향 미미] 협약체 구성(Ex. 업무협조 MOU)의 경우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일회성 소액지출인 경우가 많아 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(Ex. 현수막, 입간판, 업무 협약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지출)되므로 재정소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
- 4) [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형태 확정 필요] 현재 서울시 50+ 재단에서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, 성동구 또한 성동50플러스센터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규정에 의한 센터도 유사할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이와 별개로 센터를 지정·운영할 시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
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

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

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

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